##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6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위성곤

신정훈 • 윤건영 • 김기표

이개호 · 김정호 · 문정복

박수현 • 전재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신고 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 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5조 본문 중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를 "선임·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
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	罪로 인한 當選無效)
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	
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	
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	
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	
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	
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에 대하여는 <u>선임·신고되기</u>	<u>선임·신고되기 전에</u>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	

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 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 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 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